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501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2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C은 2008. 12. 9. 주식회사 D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C은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주식회사 D로부터 2018. 11. 14. E 주식회사를 거쳐 2019. 12. 13.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 및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가소98310호로 양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089,827원 및 그 중 6,000,815원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1. 11. 1.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3,174,409원 및 그 중 6,000,815원에 대하여 202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은 2019. 9. 30. 사망한 부(父)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모(母)인 피고 사이의 자녀로서, 피고(3/9 지분), G, H(C과 같이 모두 각 2/9 지분)과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0.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6.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인데, 망인이 2019. 9. 30.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2020.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9. 9.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0. 3. 24.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I, J, K, 한국자산관리공사, L자산관리, M, N, O은행, P 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원금 합계 68,823,815원 및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6,000,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인의 공동 소유라는 주장

피고는 1977. 8. 8. 망인과 혼인한 후 망인이 2019. 9. 30. 사망할 때까지 약 4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망인은 토목건축 근로자로, 피고는 공장근로자 및 파출부로 각각 경제활동을 하여 함께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2000. 5.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0. 6. 16.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피고는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현재까지는 피고 단독으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단독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망인과 함께 마련한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밖에 달리 망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5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0. 6. 16. 자신을 채무자로 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주었고, 2009. 9. 25.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S조합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가 2013. 8. 7. 이를 말소하였으며, 2015. 4. 1. 자신을 채무자로 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S조합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2020. 3. 31.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로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단독으로 유지,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장기간 거주하여 왔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피고와 자녀들이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피고가 평생 모은 유일한 공동재산이고 피고로서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고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C에 대해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자인 C에게는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 역시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던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C의 사해의사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채무자 C은 이 사건 분할협약이 있기 이전인 2017.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연체하여 오던 중이었던 반면 망인의 사망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C은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자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2020. 10. 14. 제기되어 2021. 3. 10.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분할협약이 이루어진 2020. 3. 24. 이후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C이 그 소송 제기사실 및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의 모(母)로서 C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가족으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남편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장기간 망인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거주하여 왔고 C은 2011. 6. 21. 이후부터 피고와 따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단독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와 C 사이에 그 상속재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